

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(사업장)

- ❖ (배 경) 기존 유예 안내기준(20.11.18)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유예가 '21. 7. 1. 로 종료되고,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새롭게 개편시행 ('21.7.1.) 됨에 따라 지침을 보완 할 필요
- ❖ (원 칙)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건강진단 실시
- ❖ (방 법) 폐기능 검사와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시까지 종전 지침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

I 적용 기준

- 대상: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·배치전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
- 기간: '21. 7. 1.(목) ~ 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
-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의 발령 기준

II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

1 기본 사항

- (공통)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되,
 - 검진 당일 이상 소견(발열, 기침 등)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 실시를 유보* 하고,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
- * 근로자·사업주는 진단기관에 '실시유보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' 제공 요청
- (특수·배치전 건강진단) 개편된 「사회적 거리두기 단계('21.7.1.)」 기준 3, 4단계(유예단계)가 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건강진단을 유예하고,
 - 유예된 건강진단은 2단계 이하로 내려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실시

【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시 기준】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일반	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 실시			
특수·배치전				
	*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, 디메틸포름아미드, 벤젠,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, 염화비닐, 아크릴로니트릴			

- 다만, 사업주는 유예단계(3, 4단계)라도 근로자가 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특수·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
-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중 폐기능 검사와 치아부식증 검사는 “감염병 재난상황” “해제” 시까지 종전 지침의 검사방법<참고>을 따름

2 일반건강진단

- '20년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유예는 '21. 7. 1일자로 종료

【참고】 '20년 일반건강진단 유예(~6.30.까지)실시 한 근로자

- ① 다음 검진은 사무직, 비사무직 근로자 모두 '22년까지 실시
- ② 다만, 사업주는 비사무직 근로자(검진 주기: 매년)가 '21년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' 21년 하반기 중에 실시해야 함

구 분		21년(상)	21년(하)	22년
사무직(2년주기)	'20년 건강진단 유예실시한 자	'20년 건강진단 (~ 6.30 까지)	-	'22년 건강진단 (1월~12월 까지)
비사무직(1년주기)	'20년 건강진단 유예실시한 자 - '21년 건강진단 희망자		'21년 건강진단 (희망자에 한해 실시)	

3 특수·배치전 건강진단

- 종전('20.11.18) 지침에 따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이어서 특수·배치전 건강진단이 계속 유예 중인 근로자는 '21. 9. 30일까지 실시를 완료

【참고】 유예기간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주기는 다음과 같이 판단

- ① 주기별 특수건강진단은 원래 받았어야 하는 날이 아닌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
- ②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유예기간에 받은 경우 실제 받은 날이 아닌 배치일을 기준으로 다음 특수건강진단 시기를 계산

III 행정 사항

- 동 지침과 배치되는 종전의 지침은 '21. 7. 1일자로 효력을 종료

❖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「폐기능검사* 및 치아부식증 검사**」는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되는 시점까지 다음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

* 폐기능 검사: 폐활량검사,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 연속측정, 비특이기도 과민검사

** 치아부식증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는 불화수소, 염화수소, 질산, 황산, 염소가 있음

○ (폐기능검사)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1차 항목에 「폐기능검사」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은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, 건강진단결과를 판정

※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수검자의 이전 폐기능 검사결과 및 문진(mMRC 호흡곤란 점수나 COPD 평가 검사 활용 권장), 호흡음 청진,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진단 판정

- 다만, 특수건강진단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폐기능검사를 실시

[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으로 폐기능검사 대상 유해인자 27종]

- 1.글루타르알데히드, 2.디에틸렌트리아민, 3.말레의 언하이드라이드(무수말레인산),
- 4.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, 5.베릴륨, 6.코발트(분진 및 흡에 한정함),
- 7.톨루엔2,4-다이소시아네이트, 8.톨루엔2,6-다이소시아네이트, 9.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(무수 프탈산),
- 10.헥사메틸렌 다이소시아네이트, 11.황화나켈, 12.(무기)주석과 그 화합물, 13.미네랄 오일미스트(광물성 오일),
- 14.곡물 분진, 15.나무 분진, 16.니켈 및 그 화합물, 17.광물성 분진, 18.면 분진, 19.석면분진,
- 20.산화철(분진 및 흡에 한정함), 21.유리섬유 분진, 22.안티몬과 그 화합물, 23.알루미늄과 그 화합물, 24.용접 흄, 25.카드뮴과 그 화합물, 26.크롬과 그 화합물, 27.텅스텐과 그 화합물

○ (치아부식증 검사)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시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

- 이 경우 과거력 및 증상 문진으로 평가한 결과임을 검사표에 기록

- 다만,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치아검사(부식증, 교모증) 및 치주조직 검사표 작성 등 치과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예방 조치 하고 실시